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분양광고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prugio.com/house/2020/hwaseo)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기간 및 공급계약 기간 내 예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체온체크 등 예방 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 청약자 및 당첨자의 견본주택의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견본주택 관람 불가)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에는 당첨자 및 계약대리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발판소독,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1800-4894) 등을 통해 분양광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고 승인(2020-공동주택과-분양신고-1, 2020.06.03.)
■ 본 건축물은「주택법」제15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허가)을 받은 건축물임. 경기도 수원시 [2019-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변경승인 2020.05.06.)]
■ 본 오피스텔의 거주자 우선공급 및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0.06.05)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0.02.21. 개정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수원시 장안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공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를 분양광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광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급일정	장소
분양광고일	2020.06.05.(금)	-
청약일시	2020.06.10.(수) ~ 2020.06.11.(목) 08:00 ~ 17:30(은행창구 청약시 은행영업시간까지)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일시	2020.06.16.(화) 16:00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계약체결	2020.06.19.(금) ~ 2020.06.22.(월) 10:00~16:00	장소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견본주택(주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 계약체결 기간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분양광고 상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자], [입주자], [수분양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고 승인(2020-공동주택과-분양신고-1, 2020.06.03.)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대유평지구 2블록)
- 대지면적 : 전체 31,060.000㎡ 중 오피스텔 지분 11,470.458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223,448.7705㎡ 중 오피스텔 82,502.6139㎡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3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1층~지상3층(판매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상3층~지상41층(오피스텔), 2개동(201~202동)
- 공급규모 : 오피스텔 460실
- 주차대수 : 493대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 : 수정메르칼리 진도 계급 Ⅶ-0.169g이상임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실)

타입	공급실수	건축물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84OA	233	84.6483	40.9611	9.2981	44.4002	179.3077	24.9191
84OA-1	114	84.6483	40.9610	9.2981	44.4001	179.3075	24.9191
84OB	39	84.9337	40.9759	9.3307	44.5508	179.7911	25.0031
84OC	74	84.8498	40.6623	9.3202	44.5057	179.3380	24.978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동호실	공급실수	층 구분	층별 실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약시	2020.12.15	2021.08.16	2022.05.16	2022.10.17	2023.03.15	입주 지정일
84OA	201동 3,4,5,6호 202동 3,4호	233	3층	6	242,100,000	269,000,000	26,900,000	538,0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215,200,000
			4층	6	243,45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216,400,000
			5~10층	36	246,150,000	273,500,000	27,350,000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218,800,000
			11~20층	59	253,800,000	282,000,000	28,200,000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225,600,000
			21~30층	60	261,000,000	290,000,000	29,000,000	58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232,000,000
			31층 이상	66	263,700,000	293,000,000	29,300,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234,400,000
84OA-1	201동 1호 202동 1,6호	114	3층	1	243,45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216,400,000
			4층	3	244,800,000	272,000,000	27,200,000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217,600,000
			5~10층	18	247,050,000	274,500,000	27,450,000	549,0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219,600,000
			11~20층	29	254,700,000	283,000,000	28,300,000	566,0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226,400,000
			21~30층	30	262,350,000	291,500,000	29,150,000	583,0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233,200,000
			31층 이상	33	265,050,000	294,500,000	29,450,000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235,600,000
84OB	202동 2호	39	3층	1	239,400,000	266,000,000	26,600,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212,800,000
			4층	1	240,750,000	267,500,000	26,750,000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214,000,000
			5~10층	6	243,000,000	270,000,000	27,000,000	54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216,000,000
			11~20층	10	250,650,000	278,500,000	27,850,000	557,0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222,800,000
			21~30층	10	257,850,000	286,500,000	28,650,000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29,200,000
			31층 이상	11	260,550,000	289,500,000	28,950,0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31,600,000
84OC	201동 2호 202동 5호	74	4층	2	241,650,000	268,500,000	26,850,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214,800,000
			5~10층	12	243,900,000	271,000,000	27,100,000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216,800,000
			11~20층	18	251,550,000	279,500,000	27,950,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223,600,000
			21~30층	20	259,200,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230,400,000
			31층 이상	22	261,900,000	291,000,000	29,100,000	582,0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232,800,000

■ 공통사항
- 총 분양대금은 층, 타입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판매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증감이 1%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31,060.0000㎡) 내 공개공지면적(3,113.9220㎡)에 해당하는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오피스텔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광고일(2020.06.0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자 우선 공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를 분양광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광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동·층·호실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급일정	장소
분양광고일	2020.06.05.(금)	-
청약일시	2020.06.10.(수) ~ 2020.06.11.(목) 08:00 ~ 17:30(은행창구 청약시 은행영업시간까지)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일시	2020.06.16.(화) 16:00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계약체결	2020.06.19.(금) ~ 2020.06.22.(월) 10:00~16:00	장소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견본주택(주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 계약체결 기간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은 PC[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이전에 전국 시중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구비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전 타입 공통	300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본/지점 창구 방문 청약 시 구비서류(법인, 노약자, 장애우 등에 한해 신청가능)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 청약신청서 [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 청약 신청금
법인	• 청약신청서 [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020.06.05.)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의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감정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0.06.05.)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 당첨자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 동·층·호 결정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청약신청한 타입에 대해 동·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 2020.06.16.(화) 16:00 이후
- 발표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5항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조 제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2020.06.17.(수)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환불방법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청약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청약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 계약기간: 2020.06.19.(금) ~ 2020.06.22.(월),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견본주택(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문의전화 1800-4894)
- 계약금 납부: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계약진행 등의 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5.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020.06.05)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건의 당첨으로 인해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신한은행	100-034-320402	(주)케이티앤지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계약자별 상이	(주)케이티앤지	가상계좌 입금

- 계약금 납부 :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201동7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701홍길동" 기재)
- 중도금, 잔금 납부 : 호실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신한은행, 100-034-320402, ㈜케이티앤지)로 관리됩니다. 호실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기 납부(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공급자가 지정하며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 및 대납이자는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에 의해 사용 승인전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9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후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버림에 따른 오차는 임의의 호실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교통영향평가)사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 비율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 ·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의 단지 내에 설치되는 입주자 공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본인의 입주 및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및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초본 첨부)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및 주변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합니다.
- 지하층은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일부 호실은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을 위해 허가도서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침실, 주방가구 레이아웃 변경, 창호 변경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팜플렛 및 견본주택(건립호실), 견본주택 내 모형(비건립 호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관련법령의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0일(2020년 2월 21일 시행)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2017.05.23.]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5 추가선택 품목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선택품목
(1) 주방키큰장 선택 (무상선택)

구분	적용부위	타입	선택옵션		
			1안 (기본형)	2안 (무상)	비고
주방 선택옵션	주방키큰장	전타입	김치냉장고 상부장	키큰수납장(가전소물장, 키큰장)	

(2) 평면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옵션			
		1안 (기본형)	2안 (유상)	옵션가	비고
실 평면옵션	전타입	실2, 실3 독립형	드레스룸 특화형(드레스룸 벽판넬+선반, 슬라이딩도어)	3,500,000	

-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 2안 선택의 경우 실 규격이 변경됩니다. (드레스룸 실 폭 2,700 -> 2,400으로 축소) 상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현관중문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옵션			
		1안 (기본형)	2안 (유상)	옵션가	비고
현관중문	전타입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도어 + 1면 간접 등박스	2,200,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4) 바닥마감재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옵션			
		1안 (기본형)	2안 (유상)	옵션가	비고
거실/주방바닥 마감재	전타입	강마루	타일	1,200,000	

- 2안 타일 마감재 선택 시 명기된 부위 외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시공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옵션			
		1안 (기본형)	2안 (유상)	옵션가	비고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OA(84OA-1)	벽 : 타일 상판 : 인조대리석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2,100,000	
	84OB			2,200,000	
	84OC			1,700,000	

-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됩니다.

(6)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호실형	선택안	실내기	제조사	설치위치	옵션가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전타입	1안	2대	LG전자	거실, 침실1	3,200,000	3,8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2,3	5,800,000	7,000,000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호실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제조사	모델명	옵션가	비고
전기오븐	SK매직	EON-B450M	450,000	택1
		EON-B401SA	650,000	
하이브리드 쿡탑		GRA-BH301H	590,000	택1
		GRA-BI300H	820,000	
식기세척기	SK매직	DWA-2628B	480,000	택1
	삼성전자	DW50T4065SS	590,000	
의류관리기	LG전자	S3HFB	1,250,000	택1
		S3DFB	1,290,000	
콤비냉장고/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Y)BBEC	700,000	택1
		RQ22K5L(R)01EC	1,200,000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BRS665040SR	5,400,000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콤비냉장고/김치냉장고 미선택시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시에는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 특성상 작동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콤비냉장고/김치냉장고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각 타입별 문열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타입에 따라 설치공간에 틈 또는 돌출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 사항
-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오피스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예금주 ㈜대우건설)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가전 및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계좌	신한은행	100-034-443216	(주)대우건설	-
잔금 계좌	신한은행	계약자별 상이		

- 계약금은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입금 예시 : 201동7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7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 계좌는 실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00-034-443216, ㈜대우건설)로 관리됩니다. 실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입주시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단지 여건사항

1. 단지외부 여건
[인접지역 도로, 기반시설 등의 개발 관련 사항]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분양광고일 현재 도시계획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이 변경,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도로에 면한 조경 패턴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시공시 인허가에 따라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지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단지주변 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 부지와의 진입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호실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변전소, 고압케이블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예비소음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오피스텔 전면 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등에 따라 방음벽의 형태, 위치 및 규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외부 고저차가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대형 상업시설(예정)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저층부의 조망권에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소음 및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 관련 사항]
• 분양시 모형 및 CG 등에 표현된 단지 외 대유평지구 내 예정된 도시공원[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공원(대평로 39번길, 대평로, 수성로에 접한 가로형 공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포함한 조경 및 시설물(건물, 데크, 육교 및 바닥선형, 포장 등 일체), 공원 레벨 고저차 등의 계획은 향후 도시공원 조경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대유평지구 내 예정된 도시공원 상세계획은 미정으로, 도시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의 위치와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유평지구 내 예정된 도시공원, 주변 도로 및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대유평지구 내 예정된 도시공원과 인접하여, 단지와 연결통로를 통해 단지 내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대유평지구 내 예정된 도시공원은 단지의 소유가 아니므로 입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 도시공원 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공원, 경관녹지 등은 모형, CG 등 분양 카달로그 내용과 다르게 인허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전용도로, 가로수 등 사업부지 외의 인접 개발계획은 공급자의 시공책임분이 아니며, 형태, 세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인접대지(업무상업복합용지)로부터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단지 내부(2층)으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접대지 건축계획에 따라 보행로의 위치, 설치시점, 연결방법 등이 모형, CG등의 예시와 다를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인접대지 건축물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입주 후 보행통로 개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인접대지로부터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는 경우 소유 및 관리주체는 지자체 승인(허가)조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단지내부 여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공동주택, 판매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동 저층부 주변으로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실, 판매시설 주방배기휀 및 화장실 배기휀, 기타 기계설비장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진동, 소음, 악취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동 저층부 판매시설로부터 소음, 악취,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 등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 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조건에 의해 단지를 둘러싸는 울타리 설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동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호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 아파트의 설계기준과 상이함에 따른 동일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층별/호수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동 배치상 층별 차이 및 실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실(특히 저층부)은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전용 쓰레기처리장은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용 쓰레기처리장이 지상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부 인접실은 악취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과, 해당 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저층부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로 인하여 이와 직접 면하는 상부층은 프라이버시,소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저층부에 위치한 실은 산책로,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 · 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실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배치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물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포장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각종 시설물의 재질 및 색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 마감재, 옥상, 조형구조물, 세부 식재계획은 승인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비상차량동선은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자연지반녹지 확보를 위해 일부 비상차량동선 위로 지피류 등 조경이 적용되며 화재 등 비상시 차량 통행에 의한 유지보수로 입주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옥상조경 및 기타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푸르지오 A/S센터로 운영됩니다. • 지하1층~지상2층에 계획된 공동주택 전용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오피스텔 입주자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2, 3층의 옥상정원은 평면계획상 부대시설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옥외(혹은 옥상)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며 전시 모형과 위치 및 수량이 법적 인허가 조건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동주택,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대기 장소가 설치되거나 학원차량이 대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입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7 설계관련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단위 호실 및 마감재
• 호실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천연 대리석 및 화강석 시공부위는 원석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별 가구(주방, 붙박이장, 욕실포함)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및 윗 호실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점검구는 위치와 크기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호실 모형이 설치되는 일부 타입의 경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별도의 발코니가 없습니다. • 각 실별로 설치되는 창호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호실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의 통신단자함, 실 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능합니다. • 각 호실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별 창호는 화재시 연기 배출을 위한 배연설비가 설치되며, 배연설비는 비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시에 환기용으로 사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지역열원을 이용한 난방 설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화장실내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며,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부위별 마감자재(색상, 규격, 재료 등) 및 창호(형태, 색상, 사양, 재료 등)는 공동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A타입과 A-1타입은 주동 입면 계획 및 배치에 따라 창호의 재료 및 부착위치가 다른 이형타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 및 관련 도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방화문, 외부창호 등은 향후 본공사 협력업체 선정결과 및 유니트 외부입면 형태에 따라 사양, 제작사, 브랜드, 프레임, 유리,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 바닥마감재는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따라 형태와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월패드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일부실은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경우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각 호실별 층고 및 천장고는 건축 계획상 공동주택보다 낮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세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주 출입구 주변으로 판매시설의 실외기실 및 휀룸, 기계실을 위한 DA(급/배기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공용면적으로써 임의적인 변경이나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장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용 주차장과 구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설치되는 창호는 소방법에 의하여 배연창이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 2층과 3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개공지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입니다. • 오피스텔동 18층에 코어당 1개 호실에 대하여 피난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 실 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실별로 실 창고의 위치, 층, 거리 등의 여건이 다를 수 있으며, 공동주택 전용 창고보다 작게 시공됩니다. • 지상 1층 주차장은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으로 오피스텔 입주자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차 주차면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방범을 위한 CCTV는 지하 및 지상주차장,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에 설치되며 오피스텔동 복도, 계단실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택배 시스템의 수량 및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냉각탑,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천정고는 변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능합니다. • 단지 내 일부 구간에 입주자와 외부인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난간은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방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외부인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내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자 공용으로 사용되며, 103동 하부 남측 차량 진입구는 아파트 주차장 진입만 허용되는 구간으로써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단위실 내에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단위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시공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천정형 옵션사항)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임시 장비이며, 본공사 시 제조사, 규격,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실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 혹은 마감 자재의 생산 중단 등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무늬,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타입은 건립타입과 평면 및 인테리어, 마감적용부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카달로그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본 단지의 마감재료 및 패턴,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식재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원시 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단지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당사의 다른 분양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호실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오피스텔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당사 분양 오피스텔 형별 마감사양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 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선경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4,992,548,000	1,108,580,000	379,500,000	136,4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6712020-104-0000100호	157,352,400,000원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대전080015
- 사업방식 : 토지소유자 개발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2019-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변경승인 2020.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분양사업자, 시공회사 및 분양대행사

구분	분양사업자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케이티앤지	(주)대우건설	㈜유성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신월동)
법인등록번호	160111-0067804	110111-2137895	194211-0014233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prugio.com/house/2020/hwaseo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 분양문의 : ☎ 1800-4894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분양광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800-4894
오피스텔(460실) 84㎡
아파트(665세대) 84㎡ / 104㎡ / 154㎡ / 189㎡